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원가계산용역기관 추가〉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1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원가계산용역기관 추가(안 제27조제2항)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 26.

다. 회 부 일 : 2025. 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 등에 한정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원가전문가와 의 정산 및 검증업무의 경쟁과 협업이 배제되어 보조사업 정산업무의 품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회계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사업 등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는 원가전문가와 상호 경쟁 또는 협업을 통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사후 원가정산에 해당하는 것인 바, 동 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국가계약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업무의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가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원가계산용역기관 추가(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 수행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 회계법인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 (실무수습 등을 이수 + 결격사유 미해당 + 회계법인 또는 다른 감사반 미소속) - <신설>	○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 수행 - (현행과 같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현행법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함)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원)¹⁾ 이상인 보조금 또는 간접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들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²⁾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보조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하고 있음.³⁾

아울러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⁴⁾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동 지침에 따라 감사인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동 사업 집행 관련 지출거래의 증빙 서류 확인, 관련 법령·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등 검증절차를 진행함.

그런데, 2023년 6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⁵⁾하면서,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 보조사업의 수도 2024년 기준 3억원 이상 9,796개에서 1억원 이상 20,238개로 증가하였음.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억원~3억원	9,081(9.0)	9,494(9.8)	10,106(10.4)	10,624(10.7)	10,442(11.3)
3억원~10억원	5,112(5.1)	5,405(5.6)	6,153(6.3)	6,632(6.7)	6,694(7.2)
10억원 이상	2,860(2.8)	3,118(3.2)	3,087(3.1)	3,233(3.3)	3,102(3.4)

※ 자료: 기획예산처

이와 같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 대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의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검증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으며, 검증 시장에서의 경쟁이 배제되어 보조사업 정산업무의 품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5) 대통령령 제33546호(2023. 6. 20. 시행)

이에 개정안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기관으로 현행 감사인 외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6)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부실 검증을 방지하고 검증 품질의 제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원가계산용역기관 현황(2026년 2월 등록기준)]

(단위: 개)

등록 단체	정부, 공공기관 출연 연구기관	학교의 연구소	산학협력단	민법에 따른 법인	회계법인	계
한국원가 관리협회	-	1	3	105	9	118
한국원가 공학회	-	-	4	6	3	13
계	-	1	7	111	12	131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원가계산용역기관⁷⁾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을 목적으로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회계에 관한 검사·증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검증 업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한국원가관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는 본질적으로 집행원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원가정산 업무이므로, 원가전문가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검증 주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의 성격 및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직무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업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73조⁸⁾에서 정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사후 원가정산에

7) 원가계산용역기관 중 회계법인도 있으므로 이는 제외함.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

해당하므로 국가계약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원가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런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검증은 보조사업자등이 작성한 정산 보고서상 정산 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검증’이란 현행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⁹⁾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상 검증기관¹⁰⁾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지

역 정산하여야 한다.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10)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¹¹⁾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¹²⁾에 따르면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해 관련 증빙을 대사하고 준거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를 검증하고, 그 집행잔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므로 인증업무에 해당하나,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로서 ‘검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1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5. 7. 8.

[공인회계사 업무 유형 - 인증업무와 비인증업무 구분]

용어	정의	예시
인증업무	준거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견 표명	
	감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확신에 대한 의견 표명
	검토	질문, 분석적절차를 수행하여 제한적 확신에 대한 의견 표명
	기타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 인증대상의 성격 및 유형에 따라 확신수준 달리짐
비인증업무	인증업무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고, 관련 보고서에 인증, 감사, 증명, 검토 등의 단어 사용 불가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세무대리, 경영컨설팅, 세무컨설팅 등

※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154p)

이에 반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원가계산을 의뢰받아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기관으로, 원가계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¹³⁾을 상시 고용하여야 함.

13)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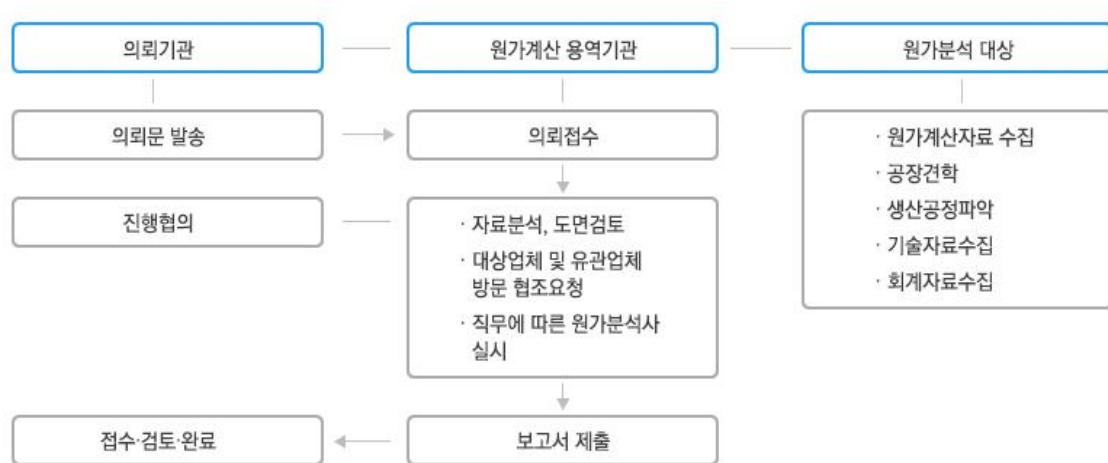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원가계산업무 수행 FLOW]



자료: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¹⁴⁾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하되, 동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의 단체¹⁵⁾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원가계산 전문인력 중 국가공인 원가분석사의 경우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바, 원가분석사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업무를 수행¹⁶⁾하고 있음.

14)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15) 한국원가관리협회, 한국원가공학회

16)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 내 원가분석사의 직무

이를 종합하면,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정업무 범위에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증빙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현행법상의 검증 권한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산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에 기준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계약금액의 사후 확정·조정으로, 계약이행관리 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내 정산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비교]

구분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내 정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법적관계	계약관계	행정상 보조 관계
적용법령	국가계약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계약금액 확정·조정	보조금사용 적정성 검증
정산대상	실제 발생 원가	보조금 집행 내역
결과	계약대금 증·감액	환수·반납·제재
성격	계약 이행의 일부	사후감독·통제

※ 자료 : 기획예산처

이를 종합해보면 국가계약법령상 원가계산서 작성 업무는 제3자 인증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산 또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검증 업무와는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보조사업 중 시설공사나 장비 구매 등 원가 산정의 적정성이 중요한 분야에 대해 해당 전문가의 검증 참여를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현행법상 검증기관인 감사인과 협력을 통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과정에서의 내실화 및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추가 관련 보조금법 개정안 계류 현황]

구분	황명선의원안 (제6789호, 2024.12.20.)	박민규의원안 (제12644호, 2025.9.3.)	조인철의원안 (제16311호, 2026.1.26.)
주요 내용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추가 - 세무법인 - 3명 이상의 세무사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 있는 경우 검증기관 선정 제한·보조금통합관리망 게재 ○ 벌칙 부과 - 정산보고서 검증 거짓으로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추가 - 경영기술지도법인 또는 경영지도법인(재무관리 전문분야 3명 이상의 경영지도사 상시 고용) - 경영지도사 단체(재무관리 전문분야 3명 이상 구성)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추가 - 원가계산용역기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생략)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 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u>감사인 또는 「국가</u> <u>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u> <u>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u> <u>역기관</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2